

남아프리카공화국 (South Afric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	자영자 미포함	일부 자영자 포함	당연적용 대상 확대
사회보험 적용제외	공무원, 연수생,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노동자 등	일부 자영자, 공무원	적용제외 대상에서 외국인노동자 삭제
보험료율	2%	2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	없음	-
연금수급 요건	60세, 다른 사회부조연금 미수령	60세, 다른 사회부조연금 미수령	-
노령연금 지급률	수령 60~74세는 최대 월 1,600 rand, 75세 이상은 월 1,620	수령 60~74세는 최대 월 1,700 rand, 75세 이상은 월 1,720	지급률 ↑
연금급여 및 상시간호수당	월 1,600 / 380 rand	월 1,700 / 410 rand	연금 및 간호수당↑
일시금	없음	없음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8년(노령), 1936년(시각 장애), 1946년(장애), 1966(실업)
- 현행법 : 2001년(실업보험), 2004년(사회부조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일부 공무원, 가사노동자 및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월 24시간 이상 근로하는 피고용자, 일부 자영자
 - 적용제외 : 대부분의 자영자 및 일부 공무원
- 사회부조
 - 당연적용 : 빈곤한 국내 거주 국민 및 영주권자, 난민
 - 적용제외 : 국가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된 자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소득의 1%(실업보험료)
 - 보험료부과 상한 소득 : 월 17,712 rand (연 212,539 rand)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유족급여, 현금 질병, 입양,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임의 납부
 - 보험료부과 상한 소득 : 월 17,712 rand (연 212,539 rand)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유족급여, 현금 질병, 입양,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임금지급총액의 1%(실업보험료)
 - 보험료부과 상한 소득 : 월 17,712 rand (연 212,539 rand)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유족급여, 현금 질병, 입양,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결손 총당, 사용자로서 기여
- 사회부조 : 전체 비용 부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노령보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 - 60세 이상이며 다른 사회부조급여를 수령하지 않아야만 함
 - 소득 및 자산조사 : 연소득은 78,600 rand(독신), 157,200 rand(부부) 미만이고, 자산은 1,122,000 rand(독신), 2,244,000 rand(부부) 이하여야 함
 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- 보훈보조금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 - 60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1,2차 세계대전,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다른 사회부조급여를 수령하지 않아야만 함
 - 소득 및 자산조사 : 연소득은 78,600 rand(독신), 157,200 rand(부부) 미만이고, 자산은 1,122,000 rand(독신), 2,244,000 rand(부부) 이하여야 함

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보훈급여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급여(장애보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 - 18세 이상 59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애로 판정된자로 다른 사회부조급여를 수령하지 않아야만 함
 - 장애는 의료평가를 통해 판정되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인 장애의 경우 매 6개월 마다 재검진, 1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영구적인 장애의 경우 매 12개월 마다 재검진 대상
 - 소득 및 자산조사 : 연소득은 78,600 rand(독신), 157,200 rand(부부) 미만이고, 자산은 1,122,000 rand(독신), 2,244,000 rand(부부) 이하여야 함
 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장애급여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급여(피부양자급여, 사회보험)
 - 가입자가 실업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으며, 사망 시 최소 1 크레딧 보유
 - 크레딧은 고용일 5일마다 1 크레딧씩 부여되며 적립된 크레딧은 유족, 질병, 입양 및 실업급여에 사용 가능
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생존하는 배우자 및 가입자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하는 동반자를 포함. 유족 배우자 또는 동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, 기한 내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, 유족급여는 21세 미만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(학생의 경우 25세 미만)
 - 유족은 복수의 급여 수급이 불가하며(유족, 실업, 산재급여 중), 사망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청구가 중단된 상태였다면 지급 불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노령보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 - 60~74세 수급자는 월 1,700 rand(75세 이상인 경우 1,720 rand)까지 수급 가능
 - 수급자가 국가계약 요양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, 최대 급여액의 25%로 감액
 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월 410 rand 지급
- 보훈급여(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 - 월 1,720 rand까지 지급
 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월 410 rand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급여(장애보조금, 사회부조, 소득 및 자산조사)

- 월 1,700 rand까지 지급
- 상시간호수당(보조금) : 월 410 rand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급여 (피부양자급여, 사회보험)
 - 소득에 근거하여 사망자 일소득의 38%~60%(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%)가 지급되며, 매4년마다 최대 365일(질병, 입양 및 실업급여 수령일만큼 감소)까지의 급여를 1일 분마다 1 크레딧을 사용하여 지급 가능
 - 일 소득은 사망자의 최종 월소득에 12를 곱하거나 최종 주간 소득에 52를 곱한 금액을 365로 나누어서 산출
 - 사망자 소득의 변동이 심한 경우 사망 전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
 - 급여 산정을 위한 월소득상한은 월 17,712 rand

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
 - 사회보험제도 일반적 관리 감독
 - <http://www.labour.gov.za>
- 실업보험기금(Unemployment Insurance Fund)
 - 양자위원회, 지역 실업급여 위원회, 심사관에서 관리하며, 사회보험제도 운영
- 사회개발부(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)
 - 사회부조제도 일반적 관리 감독
-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보장청(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Agency)
 - 사회부조제도 관리운영
 - <http://www.sassa.gov.za>

<2019년 ISSA 자료>